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달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일부를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9.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휴직, 정직”을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정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으로 한다.

제1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90일만 산입하되, 승급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8300원”을 “8만1000원”으로, “8만원”을 “8만28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일반임기제 5호 이하는 제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진한 경우”를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60만7천원”을 “890만9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44만2천원”을 “977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38만

6천원”을 “868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977만7천원”을 “1,011만9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제5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제66조제2항 중 “944만2천원”을 “977만2천원”으로, “519만3천원”을 “537만5천원”으로, “944만2천원”을 “977만2천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0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경찰간부 후보생”을 “경위공개 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같은 란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호봉의 재확정) ① (생략)	제9조(호봉의 재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확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확정한다.	② ----- ----- ----- ----- ----- ----- ----- . ---- <u>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정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 ----- ----- ----- . ---- ----- ----- ----- -----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
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
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
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
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
지 못한다.

③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
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
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
직기간. 다만, 휴직기간이 90
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9
0일만 산입하되, 승급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
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8만1000원 -----

----- 8
만2800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리업무수당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관리업무수당(일반임기제 5호 이하는 제외)

4. (생략)

④ ~ ⑥ (생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 4. (생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경우-----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1. -----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60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44만2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8만6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77만7천원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890만9천원 -----

--

2. -----

----- 977만2천원 -----

3. -----

----- 868만원 -----

4. -----

----- 1,011만9천원 -----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④・⑤ (생략)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 진 전 기본연봉에 <u>944만2천원</u> 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 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 에 <u>519만3천원</u>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 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 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 다)에 <u>944만2천원</u>을 각각 가산 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u>977만2천원</u> ----- ----- ----- -- <u>537만5천원</u>----- ----- ----- ----- ----- ----- ----- -- <u>977만2천원</u>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6